

2022년 중앙자산키움펀드 2차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

<2022.5.27.(금) 일자리사업본부 성장지원부>

I.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Q1. '창업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인데, 지원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협약서에 기재된 지원 기간(18개월)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집행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지원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Q2.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다른 사업내용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Q3.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내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신규사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제외인가요?

A4. 현재 개발 및 출시 준비 중인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합니다. 단, 신규 개발을 위해 이미 집행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Q5. 우선 고려사항에 '컨설팅을 참여한 기업에 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발원 컨설팅만 해당하는 건가요?

A5. 본원 외의 기관에서 지원받은 컨설팅도 가점 인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단, 결과보고서 등 컨설팅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6. 개발원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사업개발비 신청도 가능한가요?

A6.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심사 가점 인정은 컨설팅이 모두 완료되어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7. 조직진단비 항목도 신청 가능한가요?

A7. 불가합니다. 사업개발비는 조직(기관) 지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8. 자부담금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A8. 예산 항목 중 '자산취득비'에 한하여 자부담 필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항목에 대한 자부담은 기업 자율입니다.

Q9. 제출자료 중 '자부담 증빙자료'로 센터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확인 공문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Q9. 본 사업에 신청한 자활기업이 ①얼마의 자부담을 신청하였고, ②제출된 통장 사본을 근거로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Q10. 신메뉴 개발을 위한 장비 교체가 가능한가요?

Q10. 가능합니다. 단, 장비 교체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메뉴 개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개발 완료된 신규사업(제품)의 장비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1. 기존 OEM 상품에 대한 기술이 확보되어 직접 제조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A11.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Q12. 메뉴는 개발되어 있는데, 포장 패키지만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A12.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패키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Q13. 유튜브 같은 매체 광고비도 가능한가요?

A13. 기존 사업에 대한 광고는 불가하고, 신규 개발·출시된 사업에 대한 광고는 가능합니다. 단,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견적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Q14. ASP(소프트웨어 임대)는 주로 월 임대료를 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A14.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본 사업을 통해 신청한 모든 예산은 지원 기간 이내로 산출해야 합니다.

Q15.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을 개발할 때, 신규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만 가능한가요?

A15. 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 또는 기업 운영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Q16. 신규사업이 2~3가지 분야라면, 지원 상한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16. 가능합니다. 단, 예산 비목을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구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비: A사업 100만원, B사업 200만원]이 아니라 [A사업: 홍보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 B사업: 홍보비 200만원]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Q17. 신규 기술습득을 위한 학원비도 신청 가능한가요?

A17. 불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적합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18. ‘사업 운영 주체의 실행 능력 평가’에 기업 매출 추이와 발전 가능성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 심사하나요?

Q18. 기본적으로 매출, 고용현황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단, 그 외에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며, 본 사업의 심사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19. 제출서류 가점 부분에 ‘매출 확보 관련 계약서’가 있던데, 신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인 건가요?

A19. 그렇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거나, 기타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20. 심사 시 가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0. 가점은 항목별 3점씩이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증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가점은 3점이지만, 다른 가점 항목도 지원 판단에 도움이 되므로 추가 제출하는 것은 긍정적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Q21. 신규 체험 프로그램도 사업개발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1. 불가하진 않으나, 신청 예산 항목들이 적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워크북 제작비 등 신규사업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 체험 프로그램도 신청 가능합니다.

Q22. 심사 가점 항목 중 ‘매출 확보’에 있어서 공공기관 무상 입점 관련 협약서 등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A22.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협약서에 한하며, 별도 상세 기재 없이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협약서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23. 판로 개척에 대해 기존 입점한 온라인 채널이 현재 준비 중입니다. 차후 상세페이지 구성 및 판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3. 기존 사업 및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온라인 채널이라면 불가합니다.

Q24. 자활기업 명의로 신청하고, 예산을 교부받아야 하나요?

A24.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관리를 받고있는 기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신청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모든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기업 명의의 것만 인정하며, 실제 본 사업의 참여 주체도 기업이어야 합니다.

II.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Q1.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창업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불가한가요?

A1.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제한 조건입니다.

Q2. 광역자활기업은 여러 개의 자활기업이 모여 사무국의 형태로 운영하고, 이때 사무국의 근로자가 많아야 1인 또는 2인 정도의 인원이 전부인 곳이 다수인데, 기본요건(유급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A2. 그렇습니다. 광역자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소속의 유급근로자가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급여를 선지급하고 개발원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3. 불가합니다.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업과 개발원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4. 기본급만 250만원 신청해도 되나요?

A4. 불가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월 250만원 한도이며,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모든 지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Q5. 퇴사 후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채용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Q6. 일용직 형태로 근무했던 근로자도 1년 이내에 채용이 불가한가요?

A6. 그렇습니다. 채용 형태와 관련 없이 건강/고용보험 득실 확인서상 채용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과 근로관계를 체결한 이력이 있다면 채용 불가합니다.

A7. 주5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A7. 불가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5일 40시간,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Q8. 업종 특성상 경력자는 대부분 하청 형태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려면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나요?

A8. 형식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는 채용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9. 예를 들어, 물류 업종이라면 택배회사에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채용 가능한가요?

A9.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채용조건을 갖추었다면, 전문인력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Q10. 예를 들어, 청소 업종인데, 행정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10.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업의 업종/업태와 관련된 인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신청 시 제출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명시한 분야를 반드시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Q11. 전문인력의 경력이 정확하게 3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A11.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인력만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인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경우 채용 가능하며, 이는 추후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유사 경력도 인정하나요?

A12. 추후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에 따라 개발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같음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3. 종전 근무지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3.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 건강/고용보험 득실 확인서 등을 모두 증빙으로 인정하여 받을 예정이므로 경력증명이 곤란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문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는 기업에서 가구회사 마케팅을 담당했던 전문인력을 마케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14. 가능합니다. 기업의 업종/업태가 아닌 채용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Q15. 사회형 자활기업도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한가요?

A15. 자활사업 안내 지침 및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상세 내용에 반영하여 공고하겠습니다. 추후 본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6. 지원대상 자활기업이라면 최초 인정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 기간 내내 반드시 기본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본요건의 상실은 협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17. 사회적기업으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17.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제한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상세 내용에 반영하여 공고하겠습니다. 단,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A근로자를 본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채용일 직전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전문인력 채용 불가’ 항목에 근거하여 불가합니다.

Q18. 올해 채용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승계 가능한가요?

A18.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Q19. 퇴사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본 사업을 통해 다시 고용하여 지원할 수 있나요?

A19. 가능합니다. 단, 심사위원회 때 ‘1년 전에는 고용 해지한 분야의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0. 이력서 양식이나 면접 방식 등은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나요?

A20. 그렇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식이나 취업규칙 등은 기업이 기존에 준용하던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지정 서식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Q21. 지원금액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되나요?

A21.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전문인력의 기본급여와 기업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2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산출됩니다.

Q22.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제한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상세 내용에 반영하여 공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 올해 채용한 전문인력을 차년도에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3. 전년도 전문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업이 본 사업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1년 단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상세 내용은 내부 검토 중이므로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Q24. 해마다 전문인력 채용분야를 변경할 수 있나요?

A24. 불가합니다.

Q25. 광역자활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25.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단,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6. 예전에 지원받은 사업도 유사/중복사업 참여로 보나요?

A26. 과거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과거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것이 현재에는 종료되었다면 유사/중복사업 참여로 보지 않습니다.

Ⅲ. 공통

Q1. 향후 매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A1. 두 사업 모두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여부, 현장 수요 상황, 기타 내·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장지원부 주은서 주임

(Mail.) eunseo4810@kdissw.or.kr

(Tel.) 02-3415-6991

2. 전문인력 지원사업: 성장지원부 김혜련 주임

(Mail.) [hrkim@kdissw.or.kr](mailto:hkim@kdissw.or.kr)

(Tel.) 02-3415-6992